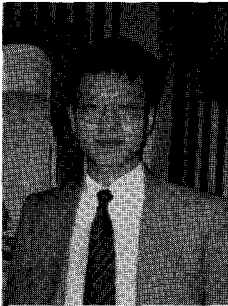




포장재질 검사·표시 환경정책과 문제점 및 대응책



신성대학 산업포장과
교수 안병국

I. 서론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 2. 6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호)』을 개정하였고(제정 '93. 8. 17, 총리령 제430호), '99. 2. 19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이 공포되었다(환경부령 제68호). 이 규칙은 과대포장 및 포장재의 재질을 규제하는 내용과 포장용기의 재사용, 합성수지 완충포장재 감량화, 포장재 사용 감량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II. 본론

1. 개정령 세부내용

- 1. 개정령 세부내용
 - 1) 제2조 (정의)의 경우 “감량화”의 정의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된 제4호에 의하면, 감량화란 포장재를 감량하거나,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매립을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2) 제5조 제2항중 포장재의 재질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동 조 제4항이 삭제되었다. 기존의 제5조 (포장재의 재질기준) 제2항 내용에 따르면

“제조자 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를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로 변경되었으며, 동항에 단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2.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3. 동물유 및 식물유
 - 4. 화공약품 및 농약
 -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3)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 제5조의2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 ① 별표 1에 규정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별표 2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조자 등은 포장재의 생산자 등과 함께 단체(이하 “재활용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감량화 할 수 있으며,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 등은 해당 제품에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조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가. 대표자 성명
 - 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다. 소요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 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대상제품 제조자 등의 60퍼센트이상 또는 대상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총량의 6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자 등의 참여 약정서

④ 재활용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목표율을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한 검사 등)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기술품질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3. 환경부장관이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4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표시방법)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제6조 3호 본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하고, 동호 각목을 삭제하였다.

기존 제6조(제품포장방법 등의 예외)의 내용에 따르면 “제조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서류에는 제품의 종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제1호),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제3호)로 명시되어 있다.

5) 포장용기의 재사용 기준이 개정되었다.

제7조 (포장용기의 재사용) 제1항 본문의 기존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구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제품 총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이 내용 중 “총생산량의 100분의 5”를 “총생산량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을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로 개정하였다.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0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2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1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6) 제8조의 제목“(포장폐기물의 감량화)”를“(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로 하고, 동조 본문“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및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함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감량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중,“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및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매장”을“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매장”으로,“감량화하도록”을“줄이도록”으로 개정하였다.

7) 제9조(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 ① 별표 4의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동표의 가전제품의 포장 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발포성 합성수지재질외의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비교}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5조의4·제6조·별표 1(비고란을 제외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제품의 종류별로 제품 포장시 내용물과 내용물간 또는 내부포장재 및 외부 포장재 사이의 공간비율을 제한하고, 포장횟수를 규제함으로써 과도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3.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

난분해성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시책의 일환으로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완충재와 식품류, 잡화류 또는 종합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대해 감량화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완충재를 사용하는 가전제품 제조, 수입자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류, 잡화류 또는 종합제품의 제조, 수입자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회수, 재활용하여 감량화 목표율을 달성하여야 한다.

III. 결론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포장용기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기물 처리와 지구환경 보존을 감안한 포장폐기물 관리지침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업계, 학계,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항상 반영함으로써 미비한 사항들은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야 하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 하고 끊임없는 환경계몽과 포장재 생산자 및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의식화 등을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는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참고문헌

1. 환경부,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95-23호), 1995. 2. 22
2. 환경부,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지침(환경부고시 제 95-90호), 1995. 8. 5
3. 환경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환경부고시 제96-92 호), 1996. 7. 25
4. 환경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환경부령 제68호), 1999. 2. 19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제4조제2항 관련)

제품의 종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식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1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2차 이내
	건강·기호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화장품(세제류포함)	10%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허리띠)	30% 이하	2차 이내
의약부외품	의약부외품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포함),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 비고 :
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날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이상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종류의 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종이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5.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 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6.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A1005-1996)에 의한다.
 7. 판매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제품 또는 포장된 제품을 포장·판매할 수 있다.

(별표 2)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 (제5조의2 제1항관련)

대상제품 및 포장재	목 표 율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이후
1. 식품류 중 계란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계란받침(난좌) 또는 팩	60% 이상	60% 이상	80% 이상	80% 이상
2. 식품류중 과일((사과와 배에 한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과일받침(난좌)	5% 이상	15% 이상	15% 이상	60% 이상
3. 식품류중 컵라면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컵용기		10% 이상	10% 이상	60% 이상
4. 화장품류(세제류 포함)제품과 잡화류중 완구·인형류의 제품 및 종합제품으로서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 포함)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받침접시류	40% 이상	40% 이상	60% 이상	60% 이상
5. 별표1에 규정된 제품(문구류·신변잡화류·의약부외품 및 의류를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포장재(제1호 내지 4호의 포장재를 제외한다)	—	—	—	40% 이상

- 비고 : 1. 제1호내지 제3호의 경우 2001년까지 적용되는 감량 목표율은 당해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해당 포장재 총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양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양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4호의 경우 2001년까지 적용된 감량 목표율은 당해연도에 판매된 제품의 종류별로 받침접시류를 사용한 품목중 50퍼센트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품목수를 합한 품목수가 판매된 총 품목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제품의 종류는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를 포함한다), 완구·인형류로 하고, 품목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품명·용량 및 받침접시류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며, 내용물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블리스터 포장은 받침접시류로 보지 아니한다.
3. 2002년이후 적용되는 감량 목표율은 당해 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 총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총량중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4.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한 검사

[별표 3]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의 표시방법 (제5조의 4 관련)

포장공간비율	% (기준 : %)
포장횟수 및 재질	1차 : 2차:

- 비고 : 1. 포장재질은 포장 차수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이 달리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질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 및 포장횟수 등에 대하여 제5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명·검사일자 및 검사번호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3. 위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 및 포장횟수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전제품 완충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별표 4]

가전제품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 대상 가전제품 및 감량화 목표율 (제9조 제1항 관련)

1. 대상가전제품 :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이상인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에어컨디셔너·퍼스널컴퓨터(모니터를 포함한다)
2. 목표율은 대상가전제품의 품목별 단위 규격당 완충재의 1994년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사용량 감량률과 당해 연도의 대상가전제품에 사용된 완충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며, 제조·수입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차별 목표율은 다음과 같다.

목표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이후
목표율	대 기업	10% 이상	30% 이상	50%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 감량률은 가전제품의 품목별 단위규격당 완충재의 1994년도의 사용량에서 당해 연도의 사용량을 뺀 수치를 대상 가전제품의 품목별 단위규격당 완충재의 1994년도의 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처리한 비율은 당해 연도에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총량에 가전제품 전품목의 판매액 대비 대상 가전제품 품목의 판매액의 비율 곱하여 산정된 수치를 당해 연도의 대상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사용총량으로 나누어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